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 연령 등을
- 대통령령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(2013.12.12.제정)」으로 상향하여 반영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폐지

4. 검토의견

금번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시행된 지방공무원
법상 직종개편과 함께 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
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
용절차, 근무상한연령 등을 2013년 12월 12일 제정된 대통령
령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으로 상향하여 반영함에 따
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 1부. 끝.